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3. 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2월 17일
-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1년 2월 24일
- 라. 상정일자: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3.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장애아동 등이 탑승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우선주차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추가(임산부 탑승 자동차, 장애아동 위

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 (안 제2조제3호~제7호)

-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안건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장애인 등이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 안임.
- 주요내용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노인과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한 우선주차구역에 임산부 또는 영유 탑승 자동차, 장애아동이 탑승한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및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의2에서는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임산부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주차 가능한 현행 우선주차구역을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 및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영유아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 감소,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사회

로 진입하고 있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17 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2월 일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선주차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추가(임산부 탑승 자동차,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 지원 자동차)
(안 제2조제3호~제7호)
- 나.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 장애인 활동 지원 자동차에 대한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임산부의”를 “노인·임산부 등의”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노인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노인 및 임산부”를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 운전 자동차”란 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7.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노인·임산부 보호”를 “노인·임산부 등의 보호”로, “노인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인 및 임산부”를 “노인·임산부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노인 및 임산부”를 “노인·임산부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구청장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노인 및 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u> <u>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u>노인·임산부의</u>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노인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u>”이란 노인 및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p> <p>4. “<u>노인 및 임산부 운전차량</u>”이란 노인 및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하는 차량을 말한다.</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u> <u>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노인·임산부 등의</u> ----- -----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u>”이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 ----- -----.</p> <p>4. “<u>노인 운전 자동차</u>”란 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p>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5.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6.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7.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노인·임산부
등의 보호 -----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노인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노인 및 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노인 및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구청장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

② -----
-----노인·임산부 등-----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인·임산부 등-----

-----.

제6조의2(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구청장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

과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노인
및 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
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
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
가 아닌 자동차-----

-----.